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3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 

### 상정된 안건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19) ..... 4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91) .....	5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4) .....	5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517) .....	5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72) .....	5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252) .....	5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381) .....	5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21) .....	5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93) .....	5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	5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	5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	5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	5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	5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	5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	5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	5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	5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5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	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	5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5

---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	6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6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	6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	6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	6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	6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	6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6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	6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	6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	6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	6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	6

---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5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까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1)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93)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00)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33)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7)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42)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4)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9)
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 
-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 2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 2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4)
  -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6)
  -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4)
  -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3)
  -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8)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 3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 3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 3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10시12분)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 논의했던 부분 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번 2번 3번을 같이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6페이지의 주요내용 1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을 6%로 할지 이자약정 부분만 무효로 할지 금전소비대차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할지 부분하고.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2번을 보시면 대부업자 등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에 대해서 현행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있는데 최고이자율 위반 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지 그다음에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8페이지 보시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전부 무효와 관련해서 논의하실 사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볼 고율의 이자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할지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첫 번째, 6페이지 불법사금융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법정이자율 제한이 법리상 타당합니다만 입법정책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불사금융업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련해서는 최고이자율 위반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등 명백히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닌 한 금전 대여행위가 있다면 최고금리 위반만의 사유로 법상 수취가 가능한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화하는 경우는 민법상 원리 위반과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논의했던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포함시킬 금리 수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고의성과 반사회성이 명확히 인정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비율 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60% 80% 등으로 원금·이자를 무효화한다면 그 비율 수준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지속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무효화하는 입법 및 운영 사례가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이자가 당초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면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력 등에 상응하는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이자가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 관계없이 손을 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어저께도 심사 중에 말씀드렸지만 반사회적 무효 계약에 있어 가지고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연이자가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게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특정한 40% 또 60% 이것은 사실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40%는 맞고 45%는 맞지 않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 자체를 전체 무효로 하는 만큼 연이자가 대부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합리적으로 의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어쨌든 고리의 이자를 포함한 대부계약 행위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정부 측에서도 수용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큰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이자가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범위냐와 관련된 판단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논의와 관련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자 제한이 없을 때 이자 제한 20%를 법으로 정한 과정이 있었고 그 20%를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정이자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이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범위라고 생각할 때 20%를 그냥 초과했다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도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법정이자의 2배를 넘는 그리고 그것을 실수나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과했다고 하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자 부여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법정이자 20%를 정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주 예외적 사례지만 금융위에서 어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가 아니라 연 40%가 나오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양보를 한다면 연 60%, 그러니까 법정이자의 3배 정도 수준까지는 완화해서 이 부분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 수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법정 최고금리 20%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대부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제약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대부계약 시 특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부행위 주체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질 때 불법적인 대부행위나 대부계약들이 근절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법정금리의 2배 수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김재섭 위원 어제도 비슷한 논의를 드렸는데요. 천준호 위원님께서 2배보다는 3배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60%라고 하면 100만 원을 빌렸을 때 1년에 딱 5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한 달에 5만 원의 이자를 내는 수준을 가지고 이것을 인신매매와 준하게 취급해서 반사회적 계약으로 다뤄 가지고 원금까지도 다 무효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전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한다면 저는 고리대만 하는 대부업체들만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봐서 한 60~70% 정도의 이자율을 보이는 대부업체에 가 가지고 저는 돈을 충분히 쓰고 난 뒤에 아마 신고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대부업자들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대부업자 자체가 악마화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을 빌렸을 때 한 달에 5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걸 반사회적 계약으로 취급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고, 앞

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0% 정도면 저는 충분히 불법사금융 내지는 고리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사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0%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말씀하십시오.

○**천준호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의 비유가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법정금리가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시적으로 60%를 이야기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당연히 적발해서 영업을 못 하도록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고.

○**김재섭 위원** 악용 가능성은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린 겁니다.

○**천준호 위원** 하여간 어쨌든 저는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까지 논의가 온 것도 사실은 여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신 거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논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 이상 되는 금리를 받고 있는,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대부행위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엄격한 규제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집행력을 가지려면 이것을 관철해 낼 수 있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법의 기준을 만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을 갖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법은 법으로 존재하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논의가 깊이 검토되고 논의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심각하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이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잠깐 부연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최근에 서민금융연구원을 통해서 설문자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8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그룹—신용점수상으로 8등급 이하부터 10등급까지—상당수가 ‘높은 이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비등록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빌리겠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이익의 불사금융자의 박탈이 아니라 그 돈이 급하기 때문에 급전 유통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60%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등록요건이 더 강화돼서 업자 수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년, 22년까지 13%에 달했던 등록대부업자의 대출 승인율도 13%에서 4.9%까지 낮아져 왔습니다. 여기서 기준만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일체를 다 무효로 하고 상향도 더 높이고 폐널티도 높인다면, 20%에서 1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뒤에 논의되겠습니다마는 형별도 10년 이상 하고 최고금리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완전 백안시해서 최고이자 부분에 대해서 원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수준 내의 금리를 수취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법의 일반원칙을 꼭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무부의 그 원칙에 따라서 부당이득분만 반환하는 상사법정이자율 6%를 주장하는 이유도 그러면 불법사금융업자가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국장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이 뭐냐, 인식이 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대출유형별 대출잔액 내용을 보면 담보대출은 크게 줄지 않는데 신용대출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유동수 위원** 특히 개인 쪽의 신용대출 규모는 그렇게 줄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 쪽의 신용대출 규모가 많이 줄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두 번째, 지금 제도권 금융에 있는 OK캐피탈 내지 메리츠캐피탈 여기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평균 금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15% 되는 테는요 아주 좋은 테입니다. 우리카드, 하나카드 이런 게 15%고요. OK캐피탈하고 메리츠캐피탈 평균 금리가 OK캐피탈은 19.98%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캐피탈이 19.7입니다. 제도권 금융 안의 평균 대출금리가 19%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업계에 대한 정비가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른 규제를 우리가 굉장히 강화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급전이나 고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장 규모는 줄어들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정부의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정책서민금융을, 이 줄어든 정도보다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를 재정으로 키울 생각입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재정과 함께 그다음에 민간금융의 은행 출연료 등으로 같이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정책금융이 그동안에 많이 늘어 왔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대부업계의 규모가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금리 상황과 고물

가 상황에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요.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논의해 주신 것처럼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게 되면 등록 대부업체, 아까 승인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시장으로 갈 유인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턱 자체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불법시장에 있는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일부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동수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에 대해서 20년도부터 23년도 말까지, 아니면 올해 6월 말까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먼저 제 기억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3조에서 5조 원 정도 규모였다가 최근 들어서 9조 원, 10조 원까지 늘어 왔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고. 19년도에 8조 정도 됐고요, 20년도 8조 8000억, 21년도 8조 6000억 그리고 22년도에 9조 7000억으로 올라 있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3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규모를 알고 싶은 겁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올해 상반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8조 6000억에서 9조 7000억으로 한 9000억 정도 정책금융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대부업시장의 줄어든 공급의 규모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충분히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만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긴급 소액생계비대출……

**○유동수 위원**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없다면 대부업에 대한 금융위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적어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정책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돼서 적어도 느는 모습,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늘리면 정책서민금융이 독립변수가 돼서 그 자체가 늘어날수록 민간의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자발적인 민간서민금융이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됩니다. 돈만 내고 나는 중저금리 신용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서민금융도 활성화되고 정책서민금융도 안정화시키고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 면을 고르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것을 위한 최종적 대안을 만들어 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게 행정 당국의, 금융위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규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가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편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시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을 때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공급 규모를 늘릴 것인가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동의합니다. 그려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말씀……

○소위원장 강준현 예.

○강민국 위원 좀 정리를 하시지요.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사실 천 위원님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외에 고금리로 인해서 무효화하는 것을 새로운 조항으로 다시 하는 건데 사실 몇 프로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법안 자체를 시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 위원님의 양해해 주시면 100%로 한번 시행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연이자가 대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100%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걸로 계속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동수 위원 강민국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100%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자제한법이나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금리를 20%로 보면 20~100까지의 구간은, 20%를 넘고 100이 안 되는 이 구간을 어떻게 규율할 겁니까?

○강민국 위원 이자제한법의 20·40%는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훈 위원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는 거지요.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민국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20~100% 사이는 이자 무효, 그다음에 100이 넘는 것은 이자·원금 무효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박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뒤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차례대로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원래 4의 주요내용1은 불사금업자예요. 등록 대부업이 아니라 불사금업자의 주요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부터 정해야, 불사금업자 그다음에 등록 대부업자 이것을 정해야 그 뒤의 게 되는데……

20에서 100 미만 구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사금업자입니까, 등록 대부업자입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둘 다입니다.

○박상혁 위원 왜냐하면 1번의 불사금업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자 자체를 무효화 한다든지 해 버리면 100%는 논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천 무효도 지금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천준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범위 안에 고리의 이자계약을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동의가 된 것 같고, 제 주장은 2배였지만 저도 완화시켜서 3배까지로 하고. 그런데 강민국 위원님 주장은 5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좁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강민국 위원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100% 나는 보고 있어요.

○천준호 위원 예, 저는 법정이자의 3배인 경우에는 반사회적 계약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그것까지는 쟁점이 남겨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 앞의 이야기를 하면서 순서가 넘어가면 뒤의 게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불사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논의해서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6페이지 불법사금융업자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 내용이 좀 달라요. 전부 무효가 있고 이자 무효가 있고 또 민병덕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자약정 무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저희들이 미등록사금융업자, 미등록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용어 변경을? 거기에는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등록사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고 규정을 했다면 여기에서 미등록사업자가 20% 내의 대부계약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자제한법 내의 금전 대부계약을 했는데 이게 등록 여부에 따라서 등록을 했고 안 했고, 그러니까 저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잘못 정도에 비례해서 원금까지 무효로 한다 이것은 규제가 좀 비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6% 상사이자율로 주장을 처음에 했고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민병덕안은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자 이 안인데, 제 생각은요 비례에 맞게 본다면 2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원금을 무효로 한다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 20%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자·원금을 무효로 한다 이것은 규제의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 부분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실 이 법이 만약에 개정안으로 시행되게 된다면 수법자들에 따라서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데 예를 들어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을 받아서 하는 적격 대부업체가 성실하게 준법 해서 최고이자율도 지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합법업체가 일시적으로 최고이자율을 약간 위반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업체 중에서 최고이자 부분은 준수하면서 대부행위를 하는 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사회 상규를 아예 터무니없이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최고금리를 살짝 위반했지만, 그런 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예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고의적인 이자 위반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등록업체, 합법업체의 일시적 최고이자 위반은 20%까지는 수취 가능하고 현행 3년 3000만 원에서 최고금리 위반만으로 5년 2억 원까지 상향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업체에 대해서 따져 본다면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년 5000만 원인데 그게 더 강화돼서 10년 5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고이자 단순 위반도 3년 3000만 원인데 아까 말한 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10년 5억 처벌부터 받게 되고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참고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법 테두리 바깥에는 이자제한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의 대부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규율도 굉장히 약합니다. 최고금리를 위반해도 1년 1000만 원에 불과하고요. 20%를 넘어간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을 해서 적법이 됐든 미등록이 돼서 불법이 됐든 간에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업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없습니다만 업으로 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로써 하고 있다면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여기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희는 법무부랑 수차례 이것 가지고 1년 넘게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민법상의 보편적인 원칙인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던 불법업체라고 하더라도 6% 상사법정이율은 법 원칙상 지켜 주는 것이 맞다는 것에 수긍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정책 판단을 해 주시고.

그런데 불법행위가 대단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자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섭 위원 그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 간의 대출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소위 말하면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여기저기 대출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적격 대부업자로서 등록을 한 뒤에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경계를 보니까 반복적이고 영업적이면 대부업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사인 간의 대출로 보는 것 같던데 이것을 불법사금융이라고 보는 경우와 그냥 사인 간의 대출을 많이 한 사람 간의 기준점이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판례로써 정립된 내용들이 있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것을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판례도 없었고요. 금융위랑 금감원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의 속생각으로는 솔직히 이자제한법에서 불법사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금융업이 아니고 사인 간의 그것도 그렇고요. 불법사금융업자는 사인 간의 거래와 준하게, 금융 당국의 등록을 받지 않고 금융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6페이지에 이자약정 무효가 있고 전부 무효가 있거든요.

○박상혁 위원 그래서 금융위안은 민병덕 의원님 안 정도까지는 수용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쉽게 말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하신다면 거기까지 저희들은, 법무부랑 협의한 게 있었습니다마는.

○소위원장 강준현 결정을 하고 가시지요. 왜냐하면 뒤에 또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유동수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등록하지 않고 20% 내의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등록하고 20% 넘게 최고이자를 상향해서 그렇게 불법을 해서 대부계약을 한 경우, 두 가지.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20% 내의 대부업을 한 경우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20%를 초과해서 대부계약을 한 경우의 잘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같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참고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위반의 정도로 볼 때 등록하지 않고 20% 내의 대부계약을 한 경우가 좀 더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

해서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사실은 저희가 현실 사례에서 왜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30대 싱글맘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렸을 것이고 그리고 1000%에 가까운 채권추심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과도한 불법 대부업체의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だ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은 구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자만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원금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금융위가 얘기했던 것처럼 6% 상사법정이자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법적 구제를 받는 몇 년 동안 그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견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이 돼야만 그런 계약으로부터 지금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것은 다분히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고통받은 분들이 상담을 해 왔던 여러 단체들과 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법안에 담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금융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인 간의 대부계약까지 이것을 다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대부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실은 업으로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경우 그리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런 정도의 판례는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인 간의 거래 자체를 다 대부업으로 규정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업으로서의 영업행위를 하지만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법규를 강화시켜 놓더라도 불법업체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처벌도 대폭 높아지고 이자·원금까지 다 무효화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리는, 법 바깥에 못 맞추고 있는 불법업체가 있으면 천문학적인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허들을 높이고 벌금을 강화하고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포섭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업체에 6%를 보장해 주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이용자분들이 거기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율이 5%에 불과해서 300만 명이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셨지만 5% 15만 명 말고 275만 명이 불법업체로 저절로 넘어가십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하나만 추가, 생각하실 때 하나 도움……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불법사금융업자를 징계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징역이랑 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아마 논의하겠지만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정도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이미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법사금융이 아닌 경우에는 징역 5년 벌금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희가 원금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뒤쪽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그다음에 벌금 5억 원 정도로 강화해서 처벌하는, 이자·원금 부분 말고 벌금이랑 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 그 점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이전에 있던 예를 들면 형벌의 경우도 대부분 실형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 써 가지고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벌금을 내도 벌어 놓은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신체적인 구속 상황이나 이런 것은 다 감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경제적 동기를 없애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시켜야만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행위들로부터 동기 자체가 사라진다고 봐서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 그런 취지로 저는 금융위도 수용하셨다고 보거든요, 일부 문제의식은.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민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기 잠깐만요. 제가 아까부터 발언하겠다고……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김상훈 위원님 제일 먼저.

○**김상훈 위원** 지금 대부업법의 각 항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소위원장 강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의견이 다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이 전혀 안 돼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현행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소수 의견 또는 부대의견으로 남기든지 그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안이 다 같

린다면 다수 위원님 의견 안은 어떤지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채택하는 그런 과정을 봤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 불사금융업자의 효력 제한 문제를 뒤에 있는 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 문제와 함께한다면 가급적 양성화를 최대한 많이 도모하고 그다음에 등록대부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실수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등록대부업자의 위반 문제는 현행 유지를 전제로 불사금융업자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 지향을 위해서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까 초반에 논의했던 3배일지 5배일지 이렇게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100% 동의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내용 2, 7페이지에 해당하는 현행 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율 위반은 여러 가지 양성화하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은 현행으로 유지해서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그 대신 불사금융업자는 완전히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말씀이 7페이지에 있는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은 현행을 유지를 하고 6페이지에 있는 것은 박성준·천준호 의원안처럼 금전소비대차 약정 전부 무효 이 말씀 드린 거거든요.

정부 의견 어떠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두 번째, 불사금융업자의 박성준·천준호 의원님 안처럼 되는 부분, 전체 무효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6페이지 상단의 다수 의원님이 제기한 강민국·김선교·김현정·박상혁 의원안은?

○**유동수 위원** 6%.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6%는 희망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6%보다 좀 더 나간 게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조금 입법정책적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 수용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더 나간 게 원금까지 모두 다 무효화하자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불법사금융업자의 규정에 미등록사금융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하지 않았지만 법정이자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금까지 무효화한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한 입법이 아닌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유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예를 들어서 신체라든지 이런 사회적 질서를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부도 동의하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동의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것의 잘못 정도와 등록하지 않은 점만, 그러니까 최고이자율은 지키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의 잘못 정도를 똑같이 친다. 이자·원금을 무효로 한다 이게 비례원칙에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뒤에 논의하겠습니다만 등록 안 한 것만으로 10년 5억의 강한 폐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원칙을 따지려면……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형법은 별도로 가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형법적 제재는 별도 항으로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못의 정도를 보면 예를 들어 사회적 질서를 위반한 등록업자의 잘못과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자 20% 밑에 있는 사람의 잘못, 이 경중의 차이가 저는 전자가 훨씬 크고 후자는 좀 약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 너무 과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은 지금……

○유동수 위원 이자 정도 무효화하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민병덕 의원안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업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냥?

○유동수 위원 미등록업자가 지금 불법사금융업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용어를 정리를 할 때 미등록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등록사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모두 다 지금 불법인 거지요. 그런데 불법인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원금·이자를 무효화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니까……

○유동수 위원 미등록업자 중에서 최고이자율 20% 이내의 대부계약에 관해서는 이자 정도만 무효로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게 민병덕 의원안 같은데요?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 이자약정 무효로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교 의원안도 여기 있네, 보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불법사금융의 경우에 20% 이하를 상사법정이율 6%로 하고, 20% 이상을 이자 무효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유동수 위원 제가 다른 대안을 한번 내놓을게요.

미등록업자에 관해서 20% 미만은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20%가 넘는 것은 어쨌든 등록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자제한법도 오버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금까지 무효화하자.

천준호 위원님은?

○박상혁 위원 잠깐 이것만.

금융위가 조금 전에 민병덕 의원안, 그러니까 6% 이런 얘기 아니라 이자약정을 무효화하는 데까지는 수용을 한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러니까 이자약정을,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데는 괜찮은데……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진척이 돼 있는 거고.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대부업자들, 합법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위반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본까지 무효화하는 이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금융위가 수용한 이자약정, 그러니까 원본은 당연히 두고 그다음에 이자 전체를 반환하는 여기까지 나갈 것이냐 이것의 선택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지요.

○천준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저는 그나마 절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법대부업, 불법사금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받는 대부계약의 모든 이자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불법사금융업자가 20% 이상의 법정 상한을 받게 되면 폐널티로 원금까지 무효화한다, 다만 20% 이내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은 보전해 주자라고 하는 게 유동수 위원님 제안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상사법정이자율 6%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자 계약 무효화 정도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더 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되는……

○李憲昇 위원 20% 이상이라 해서 무조건 원금까지 못 받게 하는 그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인 경우에, 등록을 안 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별화를 굳이 하시기 원하시면, 저희는 이자계약 무효화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별화를 원하시면 20% 이하를 차라리 상사법정이자율 정도로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게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기에는 너무……

○천준호 위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싱글맘인 경우에 그분은 1000% 이자 압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이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부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는 절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한테 만약에 뭔가 희망의 끈과 근거가 되려면 그런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だ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면 제가 보기에는 버틸 힘이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불법 대부계약이 대부분 20% 이상의 고리의 저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만들어 주고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적어도 그런 경우,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이 규정으로 인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혹시—저는 없다고 보는데—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20% 미만의 이자를 받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만 불법 대부,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은 보전해 주자라고 하는 제안이 저는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한창민 위원 아니, 의견이 좀 좁혀진 것 아닙니까?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천준호 위원 많이 좁혀진 겁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아니, 많이 좁혀진 건데 여하튼 간에 결정을 봐야 되는 건데 결정이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또 이현승 위원님께서는 20% 이상을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고.

○李憲昇 위원 맞아요.

○한창민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비례성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실제 등록해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했을 경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처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업자로서 불법사금융을 한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다가 등록대부업자들이 하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반사회적 계약까지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하의 이자율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무효화하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사회적 내용까지 있는, 20%를 넘는 행위는 불법의 문제가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다. 저는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성이나 처벌의 상당성에서도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 조정안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국장님, 이제 설득의 단계는 다 지났어, 제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융업법에 있는 등록행위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진입규제입니다. 그다음에 설명 의무든 어떻든 여기 20%는 행위규제, 판매행위의 규제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동가로, 유동수 위원님 제기해 주신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를 넘는 영업행위규제 위반이 더 악질의 범죄라고 판단하실 소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미등록·미인가·미허가업자에 대한 강한 제재를, 현행법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인가·미등록으로 했었을 때 5억 5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 금리 위반은 3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규제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물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에 20% 이상인 데다가 미등록 행위니까 여기는 강력하게 반사회성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 이상이라고 해서 원금까지 무효화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한창민 위원** 그 논리라고 하면 처벌규정으로, 양형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진입규제의 위반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반사회적 부분을 여기는 행위에 대한 규제 이 부분보다 더 낮춘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김재섭 위원** 아니지요. 한창민 위원님, 제가 아까……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 이렇게……

○**김재섭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속 그전에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인신매매 그 정도 수준의 명백한 반사회적 계약의 경우에는 원천 무효까지 하는 것 저희 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를 넘고 불법사금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신매매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법체계상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이고.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불법사금융과 대출을 많이 하는 사인 간의 경계가 뚜렷하냐는 말씀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금융위 내에서도 뚜렷한 기준점이 없고 판례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는 판례가……

○**김재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사인과 그것을 영업으로써 이익을 얻어 가는 어떤 불법사금융 간의 경계도 흐릿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과한 원천 무효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게, 말하자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시장을 급속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대부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전을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축소해 버리고,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사람들 까지도 의식을 하고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사항도 분명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업법 관련해서는 벌써 이게 세 번째 논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을 불고 해서라도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야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6페이지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은 민병덕 의원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업자 등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제한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고요. 세 번째,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전부 무효화 및 자격사정 등의 경우 대부계약 취소 근거 마련은 100% 5배를 말씀하셨는데 3배 60% 이상으로 하고 시행령에 위임한다,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잠깐만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가 뭡니까? 5배로 하겠다는 겁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한창민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천준호 위원** 그건 아닌 거지요? 3배라고 하는 합의를 존중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3배 이상으로 하고 그것은 플렉시블(flexible)하게 금융 당국에게 맡기자는 그런 이야기지.

○**천준호 위원** 법령에는, 그러면 조문상으로는 3배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李憲昇 위원** 60% 이상으로 넣고. 60% 이상으로만 하고……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 세 안 다 제 주장 안하고는, 그러면 민주당 안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인데. 맞잖아요?

○**박상혁 위원** 아니지요. 주요내용 2의 현행 유지는 강민국 의원님 안이지요.

○**유동수 위원** 강민국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어서 우리가 한 겁니다.

○**한창민 위원** 의원님 안 받아들인 거예요.

○**강민국 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그러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 줘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페이지 불법사금융업자의 금전 대부계약 효력 제한과 관련해서 이자약정만 무효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7페이지는 현행대로,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있어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볼 고율의 이자 수준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천준호 위원** 잠깐, 추가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첫날 토론 때 한번 말씀

을 드렸던 부분인데 8페이지 강민국 의원의 안에 보면…… 제가 조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표 상단에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의 행위를’ 이렇게 죽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적 욕망, 수치심,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반사회적 질서행위다 이렇게 규정한 조항인데요. 그게 대부계약 체결 과정이라고만 하면 약간 협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과 관련하여’로 이걸 규정해 주셔야만 대부계약 과정과 이후에 있는 전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불법적인 행위를 다 규제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좀…… 원래 입법 취지는 아마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 관련해서, 등록중개업자들의 등록요건과 관련해서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을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을 등록조건으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은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오프라인 등록대부중개업자 기준이 너무 낮아짐으로 인해서 약간 풍선효과처럼 등록대부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는 이분들이 그리로다 몰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불법사금융 행위의 연결 플랫폼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이것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것을 5000만 원 정도로라도 금액을 좀 상향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게 수용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시행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李憲昇 위원** 당초 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우리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한 내용을 오늘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거하고 지금 우리 논의한 것 조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진도 나가고……

○**천준호 위원** 이 안건이 종료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李憲昇 위원** 맨 마지막에 정리하시기 전에 다시 의견 내시고 일단 다른 조문까지 진도 나가시지요.

○**박상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대부계약 체결 과정이라는 말, 특별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체결하고 나서 이것을 또 개선하거나 할 때 추가적인 어떤 반사회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 부분은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박상혁 위원** 상당히 합리적인 수정 제안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체결 과정’ 대신에 ‘관련하여’ 하면 됩니까? 그건 좋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한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하면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거한 거 아닌가? ‘체결 과정’이라는 게 조금 명확성의 원칙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하면 거의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박상혁 위원** 그런데 밑에 구체적인 행위들을 명시해 놨으니까.

○**소위원장 강준현**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대부계약 과정에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정도에서.

○**강민국 위원** 체결 빼 버리고 과정? 오케이.

○**소위원장 강준현** 예, ‘대부계약 과정에서’.

자, 통과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에 따라서 8페이지 주요내용 중에서 박스 두 번째 불법사금융업자 연체이자 원본 포함 재계약 금지는 이자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제 삭제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있는 대부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 김현정 의원안은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이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면 거래상대방만 원본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불리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무효 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정리 끝내겠습니다. ‘과정에서’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9페이지 하단의 논의사항 2번 중에서 계약 무효사유 하위법령 위임 여부는 별도의 무효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령 위임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10페이지랑 11페이지를 한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내용은 금감원의 신고·조사 권한을 신설해서 금감원이 신고가 있는 경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먼저 대부업취급자격인제도 도입인데요. 취급 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인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취급자격인 채용하는 그 제도 자체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은 정부기관·금융기관 또는 서민상품 오인 표현 또는 광고 행위 금지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별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으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다만 추가 검토 사항은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10페이지 관련해서는 금감원 설립 목적, 현실적 집행 가능성 등 고려 시에 금감원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 시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 시에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신고하고서 그다음에 송부하는 그 정도 대안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첫 번째 부분은 대부업취급자격인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업 취급자격인과 유사한 보호감시인·업무총괄사용인 등을 운영 중이며 다른 전문직군을 통해 준법 감시 업무 등이 수행 가능하고, 타업권 대비 대부업권의 과도한 부담 및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7번 관련해서 추가 검토의견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국장님, 10페이지요 저랑 같이 협의하면서 금감원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조사도 하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으면 송부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지 않았나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전혀 다른 취지 같은데요? 아예 금감원은 여기에 그냥 신고만 하고 자체해석 이런 책임 있는 역할을 빼겠다라는 취지로 들려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문이 나와 있는 건데 조문상으로 말씀드리면 1항은 누구든지 금감원에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고, 2항은 금감원은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 이첩하고 그다음 금감원이 볼 사항만 본다 이런 취지로 조문 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조금 이따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조문 정리할 때 이 부분을 보면 조사도 가능하고, 여기서 지금 문구를 만들지는 않겠는데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담아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아예 그냥 여기는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금감원이 다른 거 광나는 거는 항상 뭔가 하려고 하고 더 역할해야 될 때는 항상 빠지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저는 금감원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체 고민해서, 만약에 앞으로 대부업체가 많이 양성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하면 금감원에서도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그냥 받아 가지고 전달만 해 주겠다라는 무슨 대서방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신고도 받고 필요시에, 규모가 큰 업체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조사 기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주 세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조문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조문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박상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확대되지 않나 하는 우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한창민 위원도 의견을 냈는데 박상혁 위원 의견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국장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소위원장 강준현** 조문을 그렇게 넣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협의한 문구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의 1항은 개정안과 동일하고요, 2항은 ‘금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금융위랑 조율은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별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는 조문은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고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먼저 뭔가 금감원 자기들이 조사할 주체적인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관련 대상을 송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점심시간에 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페이지 6번입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지금 검토의견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검토의견은 현행 보호감시인·업무총괄사용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것은 업권 부담 및 이행 가능성 부분에서 좀 힘든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李憲昇 위원**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박상혁 위원** 어느 의원님이 제안한 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최형두 의원안입니다.

○**박상혁 위원** 최형두 의원님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李憲昇 위원** 이거는 안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강준현**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항은 그냥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번은?

○**강민국 위원** 동의했잖아.

○**소위원장 강준현** 아까 동의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12페이지부터는 완료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벌칙 부분입니다.

벌칙 부분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 대비 얼마나 상향할 것이냐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 중에서 등록의무 위반, 부정 등록, 대부광고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이 다 개정안에 따라서 상향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은 불법사금융업자와 관련 없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 법정형 상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행위를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처벌이 금융 관련 법상 최고 수준이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엄벌 필요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은 불법사금융과 관련이 낮은 범죄로 현행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의견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

○**李憲昇 위원** 보통 징역하고 벌금하고 같이 많이 가던데 5년이면 5억이고 뭐 이렇게 가지 않나? 그렇게 보통 많이 맞추던데?

○**강민국 위원** 지금 5000만 원이니까 2억 원 이하로 해서 상향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시지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강민국 의원님 안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은 현행과 같이 하고, 위에 5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10년 5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 현재 5000만 원인데 2억으로 한다는 거잖아.

○ 소위원장 강준현 금융위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입니다. 최고이자율 위반 법정형 상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분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고요. 다만 미등록대부업자 최고 이자율 위반의 경우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 이자율 자체를 무효로 시켰기 때문에 무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의견입니다.

최고금리 위반은 등록대부 여신기관, 미등록대부 구별 없이 금융 관련 법령상 불법영업에 대한 최고 수준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에서 이미 불사금의 경우는 징역 10년 5억 이하로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교·강민국 의원안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미등록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해서 김선교·강민국 의원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자 자체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벌칙에 두려면 다른 금지 의무를 다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등록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 부분은 벌칙에서 제외하는 걸로 할지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고 벌칙을 안 두면 되는 것 같습니다.

○ 강민국 위원 뭔 말이야?

○ 소위원장 강준현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미등록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해서 강민국 의원안에서는 그걸 상사이자율 6%로 했기 때문에 6%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위에서 결정을 이자 자체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무효된 행위에 대해서, 무효된 부분에 대해서 벌칙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 강민국 위원 무효는 계약 자체가 무효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것은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거지.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미등록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 수취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거기다 의무를 둬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자 수취 의무를 그 규정에 두고 법정형을 둘 것이냐 아니면 무효로 했으니까 벌칙 조항을 안 둘 것

이냐, 이렇게 2개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아까 무효로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6페이지에서 우리가 민병덕 의원안을 받은 거잖아요. 수용한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없애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자약정이 무효가 됐잖아요. 원본은 되고 이자약정은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아예 형별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의 동의 사항은?

○**한창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박상혁 위원** 그렇지요. 추가적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를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앞에다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별칙을……

○**한창민 위원** 추가해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의무 규정을 둬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아까 강민국 의원님 안대로 5년 이하 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요.

○**소위원장 강준현** 단서 조항 붙인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일단 금지 조항을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새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별칙 조항을 규정하면 됩니다.

○**박상혁 위원** 형별의 근거 조항이 있어야지요.

○**한창민 위원** 예, 근거 조항을 하나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李憲昇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강준현**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분은 강민국 의원안의 겹침금지 의무만 저희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별지 보시면요, 별지의 부칙 심사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에 대해서는 3개월·6개월·1년 이렇게 시행일이 있는데 하위 규정 개정을 감안할 때 6개월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시행일은 6개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2페이지 적용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등록요건 강화라든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또는 계약 갱신 그다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체결 또는 갱신에 대해서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는 적용례를 둬야 되는데요. 다른 부분은 개정안처럼 적용례를 두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경우에는 이미 민법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다음에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해서 보호할 법적 신뢰보다는 이를 바로 제한할 공익적 이유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는 시행 전의 행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페이지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미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강민국 의원안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박성준 의원안은 1년, 김태선 의원안은 6개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과조치를 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동수 위원 그때 2년으로 얘기했잖아요?

○李憲昇 위원 2년으로 합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2년으로. 상당히 많이 결격요건이 강화가 될 테고 또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되는 만큼 2년 적용 유예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위원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년이면 너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경우에도 2006년에 대부업법 개정할 때 4년 적용 유예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반으로 단축한 2년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참고삼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금 1억·3억 원으로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1000만 원, 5000만 원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자본 유지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2년이 끝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부업자가 되려면 그 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안 되고 생짜로 3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또 서민층한테 이용·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가피하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년이라 했지만 2년 내에 적합해야 한 거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 되는 데들은 차곡차곡 맞춰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2년 안에 빨리 요건이 맞춰질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2년 팬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창민 위원 저는 2년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2년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도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2년 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자료는, 어저께 얘기한 대부업법 개정안 결격사유 보완 관련 참고자료 별지를 보시면 대부업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오늘 보고하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완 방안을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등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에만 적용되던 금융관련법령 위반 사유를 저희가 넓혀 가지고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랑 협의해서 별지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어제 네거티브 시스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받은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예.

○소위원장 강준현 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됐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준현 예,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대부업법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여야 간의 합의를 소위에서 이루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됐을 때 대부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정책금융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자금의 공급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회의 열리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대부업 내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금의 공급 부분에 대해서, 정책금융의 공급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내용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 저희가 심사한 예산안을 놓고 보면, 정부가 제출한 안을 놓고 보면 내년도에 6100억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 심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계속 지켜 주지 않으시면 공급 목표가 내년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혹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가지고 공급 목표가 최소한 유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6100억이 줄게 돼 있거든요, 정책서민금융 목표가.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올여름부터 예산실장하고도 수차례 협의했고, 챙기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서민금융에 대해서 금융위와 금융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재위나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 수요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시장에 어쩔 수 없이 유입되는 우리 서민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지금 6100억뿐만 아니라 사실 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전에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금융 재정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꼭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다른 데로 풍선효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을 꼭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부위원장님,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세 차례 소위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동안에 천준호 위원님 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민국 간사님은 어디 나가셨나 보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 ○출석 위원(15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병기 김상훈 김재섭 김현정 박상혁  
유동수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유영준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성주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김복규